

제 1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회사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일반사항

3.1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3.2 의장

-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3 소집

- 정기 이사회는 1 월, 2 월, 4 월, 7 월, 10 월, 12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대표이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 전일까지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4 제안 및 의사

- 이사회 의제는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발의한다.
-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그 취지를 대표이사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5 긴급사항

-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대표이사가 이사 2/3 이상 동의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전항에 의거 긴급 조치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 전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일정을 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부의절차

-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소집요청서(서식)와 부의 안건(제안설명)내용을 담당이사 결재를 득한 후 이사회 주관부서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의안을 명시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7 의안설명

의안의 제안설명은 당해 의안의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상세한 설명을 당실무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3.8 결의방법

가.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서 하여야 한다.

나. 이사 및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 및 감사가 음성으로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

다.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라. 전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9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3.10 이사회 참여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해당업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3.11 의사록 등의 작성

가. 이사회 주관부서장은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출석한 이사 및 감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업무 소관부서는 부분을 보관하여야 한다.

3.12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12.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정관의 변경
- 4) 자본의 감소
- 5)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6) 주식 배당 결정
- 7)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또는 취소
- 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3.12.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결정 및 변경
- 2) 전략적 제휴 및 신규 사업 진출
- 3) 해산,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4)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정관에서 정한 이사후보의 주주총회에의 추천
- 6)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 보수의 결정
- 7)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
- 8) 비등기임원의 주요직책(이사가 아닌 재무 담당임원) 임명 승인
- 9) 비등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3.12.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주식의 발행, 매입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
- 2)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및 그 상환
- 3) 중요한 투자결정 및 계약체결 (건당 자본금의 10% 이상)
- 4)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저당권 또는 질권설정 (건당 자본금의 10% 이상)
- 5) 비유동자산의 담보제공, 출자회사 담보, 보증 등 채무인수 및 기타 채무부담 가능성이 있는 사항
- 6) 중대한 결손처분 (건당 4 억원 초과)

3.12.4 기타

-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상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 2) 법령,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내부거래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주요경영사항 등 (대표이사 결정 사항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 3) 중요한 소송의 제기
- 4) 기부금 출연 (건당 1 천만원 초과)
- 5)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 6) 이사회 규정, 내부회계관리지침 제정 및 개폐
- 7) 사외이사의 경비 지급(이사회 업무관련 자료 및 정보조사 비용, 참석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3.13 간사

가. 이사회에는 간사를 둔다.

나. 간사는 이사회 업무 주관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